

부산광역시 사하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안이유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공포(2007.1.11)와 관련하여 국가주요정책에 대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감면조문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고령화 사회가 급격히 진행됨에 따라 고령자의 역모기지 제도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5조의 2)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21조의2)

3. 관계법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 제2항 제4호의 2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4조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고령자의 역모기지 제도 실시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5조의 2)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50%를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안 제21조의 2)

□ 적법성 부분은

지방자치법 제7조 및 제9조에 공익 등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과세면제와 불균일 과세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개정안은 적법성에는 문제가 없음.

□ 다음, 우리구 세입에 미치는 영향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부산으로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이 12개이나 우리구관내 이전기관이 없어 당장 세입에 영향은 없을 것이나

공공기관 부산이전

- 남구 문현단지 :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대한주택보증, 한국남부발전, 한국청소년상담원
- 해운대 센텀시티 :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 영도구 동삼매립지 :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은 우리구 관내에도 대상이 되는 주택이 있어 이 제도가 실제로 적용되는 2008년부터는 재산세 감소에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역모기지 대상주택

- 대상 : 65세이상 소유한 전용면적 85㎡이하, 3억원이하 주택
- 건수 : 2,881건

□ 다음, 감면의 타당성은

역모기지 실시주택에 대한 감면의 경우는 연간소득 1,200만원이하인 65세이상 고령자가 소유한 85㎡이하의 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저소득 고령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이며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기간 재산세를 감면하는 것은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하므로써 국가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는 타당성을 갖고 있어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가결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관 계 법 령 》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

제7조 (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제9조 (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제3조의2 (연금의 방식 등) ①생략

- ②법 제2조제8호의2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이란 65세를 말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9조제2항제4호의2

제9조 (설치 및 기능) ①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업무계획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사에 주택금융운영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7.1.11)

1.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과 업무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정관의 변경
3. 예산의 편성·변경 및 결산
4. 주택저당채권의 양수기준에 관한 사항

4의2.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의 보증기준에 관한 사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4조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7호의 기관을 말한다.
2. “이전공공기관”이라 함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제2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개별이전하는 공공기관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규모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이전시기에 관한 사항
3. 이전비용의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이전계획은 수도권에 있는 이전공공기관의 본사 또는 주사무소 및 그 기능의 수행을 위한 조직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③이전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그 계획을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지방이전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